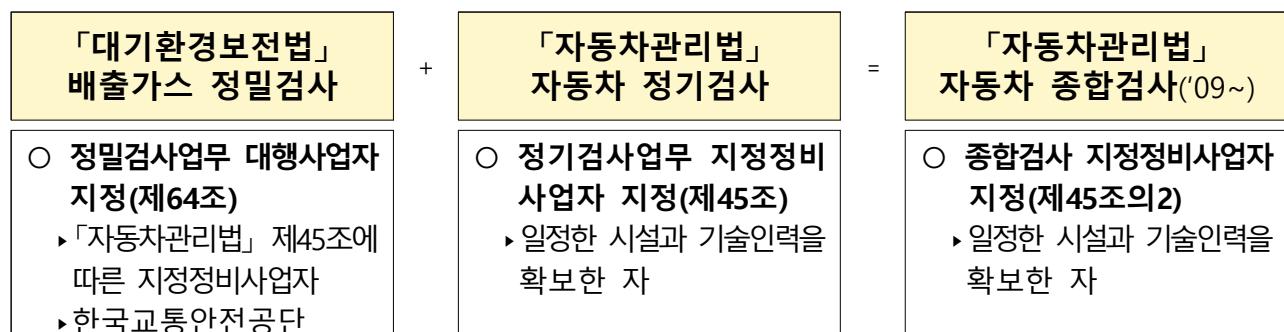


① 개정 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자동차검사용 토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4조, 제44조의2, 제45조, 제45조의2, 「<u>대기환경보전법</u>」 제6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사업자가 자동차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인용조문 정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<u>대기환경보전법</u>」 제64조 관련 인용조문 삭제

□ 개정 내용

-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상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「자동차관리법」 상 자동차 정기검사가 「자동차관리법」 상 자동차 종합검사로 통합
 -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64조 삭제에 따라 재산세 인용조문 정비



❖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(영§101③-제6호)

- ▶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·연구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
 - ▶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4조, 제44조의2, 제45조, **제45조의2**,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14조 및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64조에 의한 정비사업자가 자동차·건설기계 검사용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
- ⇒ 인용조문을 삭제해도 별도합산 적용대상은 동일

□ 적용 요령

-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

|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